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-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원이율을 현재 이자율 하향추세와 공동체 및 사업단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 주요골자

- 대여자금의 이자 하향조정 : 연 5% ⇒ 연 3%
-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범위 조정 : 5% ⇒ 3%

 의안전문 :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안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연 5%”를 “연 3%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5%의 범위내”를 “3%의 범위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췌

국민기초생활보장법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<p>제44조(보장기금의 적립) ①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상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</p>	<p>제41조(보장기금의 설치)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</p>